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82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김태년 · 이소영 · 이강일

정성호 · 박희승 · 송옥주

전진숙 • 유후덕 • 이재정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첨단기술분야의 국내 우수인력의 공급이 수 요에 미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머징 국가(베트남, 말 레이시아, 태국 등)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체류자격은 그 활동 범위가 정해 져 있고,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환경에서 유학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유학생은 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등이 쉽지 않음. 장기체류자격 중 첨단기술인턴(D-10-3)을 정하고 있으나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이머징 국가들의 우수인력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20조제2 항 신설).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첨단산업 인재를 위한 체류자격의 특례) ①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및 인공지능 분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분야의 교육·연구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또는 국내 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을 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의 요건,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완화의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의4에 따라 부여된 완화된 체류자격에 따라 본래의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이 허가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 및 제20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10조의4(첨단산업 인재를 위한 체류자격의 특례) ① 제10조의 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 관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 플레이, 바이오 및 인공지능 분 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 단기술분야의 교육・연구 과정 에 참여하려는 사람 또는 국내 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 해서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생략) <u><신 설></u>	범위 및 체류기간을 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의 요건,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완화의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0조의4에 따라 부여된 완화된 체류자격에 따라 본래의 체류자격에 따라 본래의 체류자격에 따라 보래의 체류자격 외의 활동이 허가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것

으로 본다.